

의안번호	2208631
의 퇴 인	김성환 의원
회 답 일	2025. 4. 22
추 계 번호	25A1211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6조의4(히트펌프의 보급 지원 등)	○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효율의 향상 및 건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 및 부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 ○ 그 밖에 히트펌프 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36조의4(히트펌프의 보급 지원 등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히트펌프 및 부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(안 제36조의4)

○ 개정안은 히트펌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, 한국에너지공단 의 「신재생에너지산업 실태조사」에 따르면 “히트펌프는 냉매의 발열 또는 응축열을 이용해 저온의 열원을 고온으로 전달하거나 고온의 열원을 저온으로 전달하는 냉난방장치로,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열을 끌어 올리는 역할”을 함

－ 참고로, 개정안과 관련하여 김성환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2208632)은 재생에너지의 한 유형으로 “공기열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”를 추가하고 있어, 개정안의 히트펌프는 현행 지열 및 수열 열펌프 외 공기열 히

트럼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임

□ 개정안은 히트펌프 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합리적 가정에 따른 추계가 어려움

○ 참고로, 한국에너지공단의 「신재생에너지산업 실태조사」에 따르면 현행 재생에너지(지열 및 수열) 관련 열펌프 제조업의 매출액 추이는 다음과 같음

[표 1] 지열 및 수열 열펌프 제조업의 매출액 추이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
지열 및 수열 열펌프 제조업	466	439	674	563

자료: 한국에너지공단, 「신재생에너지산업 실태조사」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